[별지 제2호 서식]

*인터넷으로 신청접수된 문서입니다.(문서번호:20253353P2)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판독특이자	성명	[redacted]	생년월일	[redacted]
	판독특이기간	[redacted]	기간 중 작업시간	관리구역 출입 없음 : 0분
	기간 중 비정상적인 방사선작업 내용	없음		
	방사선피폭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작업내용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주로 갑상샘치료목적 의약품 사용을 방사선 관련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2024년 10월 15일 부터 병가로 TLD를 해당 팀에 반납하였으나 해당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병가 사유가 방사선과 완전 무관함으로 피폭으로 인한 병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가로 인한 휴직 전 TLD를 이전 소속 팀 책상에 올려 놓았으나, 팀.교체 및 자리 변경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정피폭 방사선량	선량판독결과		추정선량	기록준위 미만
	재발급선량계	없음	전자개인선량계	없음
	선원의 종류	(변동:없음) 개봉 / I-131 / [redacted] 에서 사용		
	작업장 평균 공간선량률	0.20 μSv/h		
	추정선량 산출방법 및 근거	3분기 TLD 교체 직후 바로 병가 신청 후 현재까지 미 복귀인 상태. 따라서 TLD 분실 후에는 방사선작업으로 인한 피폭 없을 것으로 예상.		

상기 판독특이자에 대한 2024.10.01 ~ 2024.12.31 기간동안의 피폭방사선량을 추정함에 있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정선량의 산출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판독특이자 : [redacted] (서명)

방사선안전관리자 : [redacted]

"걸어온 원자력 안전 30년, 걸어갈 국민 안심 30년"

한 국 원 자 력 안 전 기 술 원

수신자 판독특이자 발생기관장

(경유)

제 목 제21-01차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1.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20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 위 호와 관련, 제21-01차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피폭선량을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을 통해 통보하오니, 해당 판독특이자의 피폭선량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판독특이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시고 그 이행결과는 정기검사 시에 확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확정된 피폭선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추가하여 2021년 5월 19일(3주)까지 우리 원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직원 [redacted] 실장 [redacted]

협조자

시행 방사선비상대책실-107 (2021.05.03) 접수 ( )

우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구성동 19-0) http://www.kins.re.kr

전화 [redacted] / 전송 / E-mail [redacted] /비 공 개 (6)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판독특이자 선량확정 결과

기본정보

기관명[기관코드]			
판독특이자 성명		생년월일	
판독특이기간	2020-10-01 ~ 2020-12-31	종사자 구분	방사선 작업종사자
판독기관		선량계 종류	TLD

판독특이자 조사

조사일시	2021-04-06 ~ 2021-04-06		
조사자			
발생사유(대분류)	분실	발생사유(소분류)	취급부주의(개인)
관리구역 출입유무	있음	방사선작업 유무	있음
사용선원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Cs-137/62.2TBq		
방사선작업내용	- 판독특이자는 혈액 멸균용 세슘 조사기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되어 관리됨.		
발생경위	- 12월 30일, 야간 근무를 실시한 뒤 개인선량계가 패용된 가운을 책상에 걸쳐놓고 귀가하였음. - 1월 2일,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여 개인선량계 교체 과정에서 분실된 것을 인지함. - 진단검사의학과 내 책상, 서랍, 바닥을 확인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개인선량계 분실을 보고함.		
조치사항			

피폭방사선량 평가

사업자 추정선량평가	1) 동일업무 작업자 피폭선량에 의한 평가:0.1mSv - 과거 진단검사의학과의 동료작업자의 최대 피폭선량(0.17mSv)을 고려하여 평가함.
KINS 추정선량평가	- 동일업무 작업자 피폭선량, 작업환경 반영 평가, 개인 피폭이력에 의한 평가 결과 중 보수적으로 동일업무 작업자 피폭선량 의한 평가 결과를 채택하며, - 선량평가 추정 시 표기원칙에 따라 유효숫자 한자리로 표기하여 0.2mSv로 평가함.
피평위 확정 선량	0.2mSv
비고	